

의안번호	2213096
의 퇴 인	위성곤의원
회 답 일	2025.11.11.
추 계 번호	25D5164

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소방청장이 5년마다 위험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4억 4,500만원(연평균 8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위험물안전관리 종합계획 (안 제3조의3제1항)	445	—	—	—	—	445	89

주: 1. 위험물안전관리종합계획(안 제3조의3제1항)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
2. 본 추계는 유사사례인 국토교통부의 제10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비용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의3제1항 (위험물안전관리 종합 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신설	소방청장은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 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6조의2(위험물시 설 점검업의 등록 등)	제조소등의 위치·구조 또는 설비에 대하여 전문적이 고 기술적인 점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18조(정기점검 및 정기검사)	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 가운데 사고 발생 에 따른 피해의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부터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3조의3제1항 (위험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신설	○	—
2	안 제16조의2(위험물시설 점검업의 등록 등)	—	시·도지사에게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등록하는 업무는 기존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가능할 것으로 예상
3	안 제18조(정기점검 및 정기검사)	—	현행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등이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, 개정안은 점검 등을 대행하는 주체에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소방청장이 5년 마다 위험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⁾
-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11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3%	2.0%	1.9%	2.0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마다 위험물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비용
-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의 정책연구용역 비용을 활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
 - 유사사례로 국토교통부의 제10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의 경우, 2025년 4억 2,000만원의 정책연구용역 비용을 편성하여 추진 중
 - 이에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하여 2028년 기준 정책연구용역 비용 산출
- 추계결과, 위험물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4억 4,500만원으로 추정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인 국토교통부의 제10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비용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